##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04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이정문・김남근・정준호

민형배 · 오기형 · 이연희

김현정 • 문금주 • 문진석

이소영 · 조승래 · 이강일

박균택 · 김영화 · 박상혁

이학영 • 이성유 • 박주민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 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 대하고자 함.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82조의3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400조제2항 본문 중 "사외이사의"를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로 한다.

제542조의4제3항 본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 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 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42조의8의 제목 중 "사외이사의"를 "독립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7 호 중 "사외이사로서의"를 "독립이사로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 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

제542조의11제2항제2호 중 "사외이사일"을 "독립이사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의"를 각각 "독립이사의"로 한다.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 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5조제3항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第364條(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 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 가-----본점소재지나 인접 集하여야 한다. 한 곳에 소집하여야----.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 <신 설> 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 로 총회를 개최한다.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여야 한다. <신 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 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 면) ① (생략) 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 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 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

다)의 6배(<u>사외이사의</u>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 ② (생 략)
  -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 우에는 <u>사외이사</u> 등의 활동내 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 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 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7 례) ① · ② (생 략)
  - ③ 제2항의 <u>상장회사가</u>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u>배제하거나 그</u>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

<u>사외이사 및 제542소의8</u>
제1항의 독립이사의
,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독립이사</u>
·.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상장회사는 제382조의2</u>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배제할 수 없다</u> .

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 <단서 삭제>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 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 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 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④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8( <u>독립이사의</u> 선임) ①
<u>3분의</u> <u>독립이사</u>
(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
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
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
<u>하 같다)</u>
독립이사는
②독립이사는

상실한다.

- 1. ~ 6. (생략)
- 7. 그 밖에 <u>사외이사로서의</u>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u>사외이</u> 산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제1항 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 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 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 도록 <u>사외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u>.</u>
1. ~ 6. (현행과 같음)
7 <u>독립이사로서의</u>
③ <u>독립이</u>
<u>사</u>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4
독립이사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
5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u>사외</u>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u>사</u>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한다. 이 경우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가 <u>사외이사</u> 후보를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정기주주총회의 해당하는 해당연도의해당일)의 6주 전에추천한 <u>사외이사</u> 후보를 포함시켜야한다.

-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생략)
  -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 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 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
  - 1. (생략)
  -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u>사외이</u> <u>사일</u> 것
  -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독립
<u>이사독</u>
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u>독립이사</u>
,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현
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독립이
사일
<u> </u>

1항의 상장회사의 <u>사외이사가</u>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 인 <u>사외이사의</u> 사임·사망 등 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의</u>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 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 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

<u> </u>
<u>.</u>
4
<u>독립이사의</u>
독립이사의
<u> т н т т т</u>
1. • 2.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O.E.J.
<u> 2명3명</u>

\_\_\_\_도린이사가

야 한다.

- 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 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 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 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 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 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 ⑧ (생 략) <신 설>

<u>.</u>
③ (현행과 같음)
4
<u>독립이사가</u>
⑤ ~ ⑧ (현행과 같음)
ll 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
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

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 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 다.

-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 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 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 다.
-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 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 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신 설>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등)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 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 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 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 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第

- · ② (생 략)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
  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이
<u>한다.</u>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
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
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
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독립이사
2
독립이사
독립이
<b>አ}</b>

-----독립이사-----